『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2019. 1.

특 허 청

목 차

Ⅰ. 기관 현황 ····· 1

1. 조직 및 정원 ····· 1

2. 예산 ····· 2

Ⅱ.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3

Ⅲ. 2019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 5

Ⅳ.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 9

1.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 9

2.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 15

3.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 21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 25

Ⅴ. 분기별 추진계획 ····· 29

Ⅰ.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조 직)**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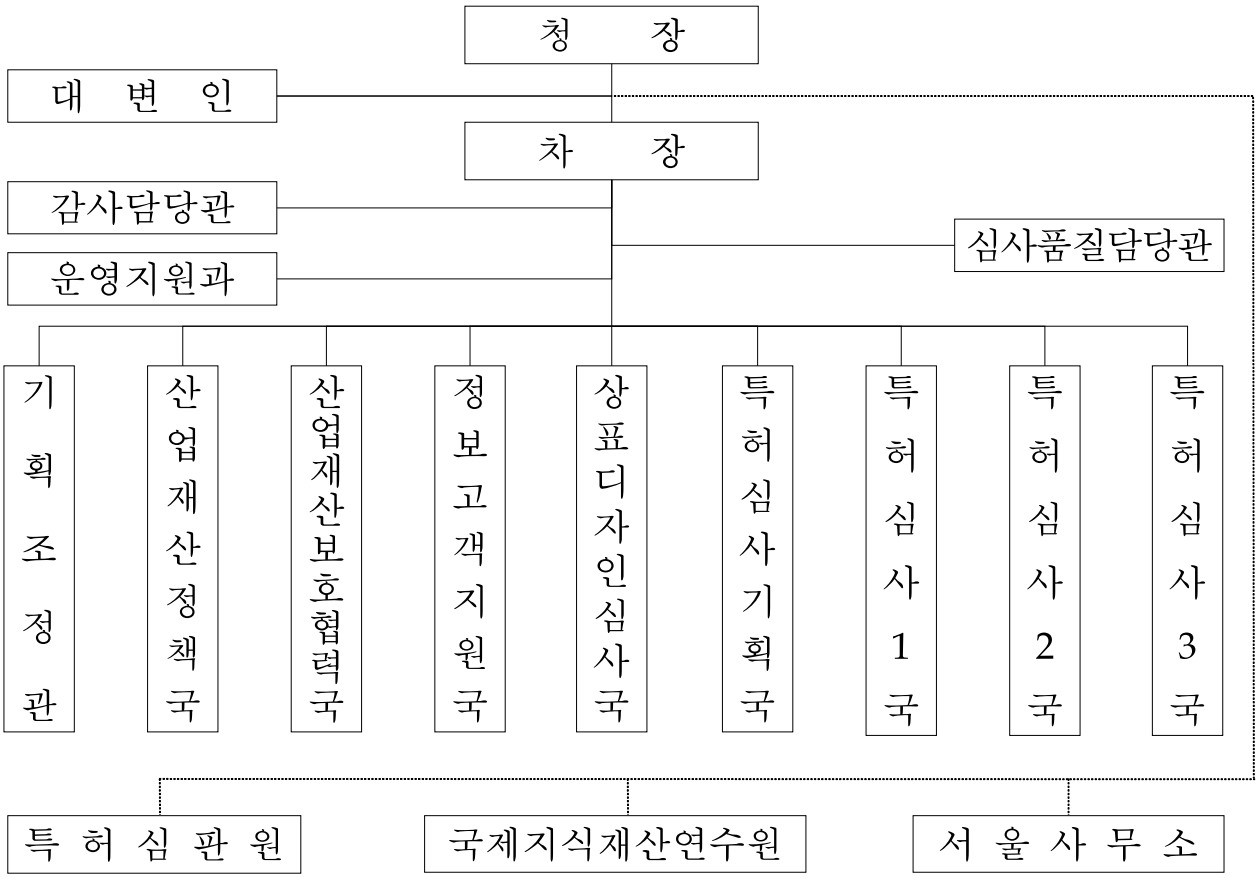

□ **(정 원)** 총 1,661명(본청 1,448명, 소속기관 213명)

('18. 12월말 기준, 명)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 이하	관리운영	계
계	1	23	98	1,075	421	43	1,661
본 청	1	10	53	978	371	35	1,448
특허심판원	-	12	41	85	16	-	154
연 수 원	-	1	3	9	18	4	35
서울사무소	-	-	1	3	16	4	24

* (심사관) 1,047명(일반직 945명(4·5~5급 831명, 6급 114명), 전문임기제 102명)

* (심판관) 96명(4급 40명, 4·5급 56명)

2 예 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892억원 (순계 기준)

○ **(세 입)** 수수료 수입 4,942억원, 기타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950억원

○ **(세 출)**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사업비 2,897억원**, 인건비 1,374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545억원** 등

< '19년도 예산 현황 >

(백만원, %)

구 분		'18예산(A)	'19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606,237	589,207	△17,030	△2.8
세입	○ 수수료 수입	505,617	494,211	△11,406	△2.3
	○ 기타 수입	100,620	94,996	△5,624	△5.6
세출	○ 주요사업비	279,758	289,746	9,988	3.6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81,782	78,575	△3,207	△3.9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498	98,619	7,121	7.8
	-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69,951	68,489	△1,462	△2.1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31,811	39,118	7,307	23.0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716	4,945	229	4.9
	○ 기관운영경비	151,459	154,486	3,207	2.0
	○ 일반회계 전출	107,243	87,510	△19,733	△18.4
	○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등	67,777	57,465	△10,312	△15.2

Ⅱ. 2018년도 주요 추진성과

□ (정책 아젠다)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을 수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18. 12)하여 **창업·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

○ 「IP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활성화 기반** 구축('18. 12)

○ **특허창출 全 과정**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18. 3)

* ① R&D단계 발명품질 제고, ② 출원단계 출원품질 향상 ③ 심사단계 심사품질 혁신

□ (심사·심판)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 수용도 제고

○ 심사·심판 **인력 증원**과 **특허심판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파트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체제**로 전환

○ **선행기술조사 품질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관리 전담기관을 도입**하여 **품질경쟁 체제** 구축

< 심사·심판 품질 관련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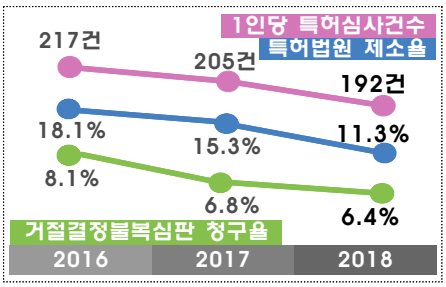

□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한 특허 창출 및 거래·사업화 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으로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IP투·융자 지원** 강화

* IP-R&D 과제(4차 산업 / 전체) : ('16) 35 / 203 → ('17) 57 / 228 → ('18) 73 / 253

< IP-R&D 성과 ('13~'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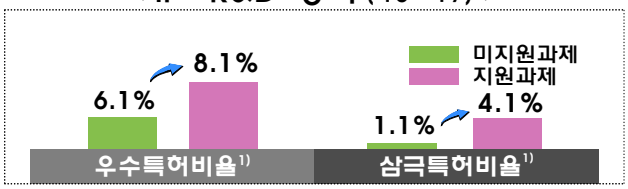

< IP금융 지원 성과 (평균 매출액, '1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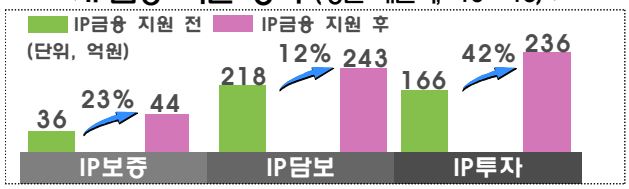

1) 우수특허비율 :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 비율
삼극특허비율 : 국내 등록 특허와 동일 내용의 발명이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된 비율

○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지식재산 위험 관리·지원**을 위한 **특허공제사업** 시행 기반 마련

*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제50조의5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18. 5. 29. 시행)

○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마련('18. 10)

* 시장관점의 특허 창출·관리체계 효율화, 사업화 저해규제 개선 등

□ (지식재산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 **아이디어 탈취행위, 영업외관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시행('18. 7)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호 집행** 강화

* '17년말 이후 총 92건(아이디어 탈취행위 29건)의 신고를 받아 64건 처리

○ **특허·영업비밀·디자인 특별사법경찰** 도입('18. 12)으로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해 **신속·정확한 수사 기반** 마련

○ **국민의 안전·건강** 관련 품목 및 **온라인 대규모·상습 위조상품** 중점 단속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실적('18) : 542,505점 압수(정품가격 365억원 상당)

○ **한류편승 외국기업**에 대해 베트남·태국 등에서 **현지단속** 실시

* 베트남·태국의 소비자보호법 등을 근거로 물품압수 및 벌금 부과('18. 7~)

□ (국제협력)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국제환경 조성

○ **IP5[2]간 PCT[3] 협력심사** 시행('18. 7)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특허공동심사 대상국**을 **중국 등 주요 무역국**으로 확대

○ 아세안, 동유럽 등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해외권리 확보** 지원

*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신설 및 협력협정 체결('18. 3), 한-EAPO MOU 체결('18. 9)

○ UAE('18. 3)·사우디('18. 9)와 **IP 선진화지원 협력 MOU 체결**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2) IP5(Intellectual Property 5) : 전 세계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의 5개 특허청
3)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 하나의 방식·언어로 139개 동맹국에 동시출원 가능한 제도

Ⅲ. 2019년도 정책환경 및 추진방향

1 지식재산 정책환경

□ **(국제 환경)**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제권력 구도 재편

○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이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가치사슬** 장악을 위한 **화두**로 부각

○ **주요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

	지재권 보호가 본질인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력
	시진핑 주석은 지재권 보호제도가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건설 추진의 핵심이라고 강조('18)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재산 전략비전' 발표('18)

☞ **IP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필요**

□ **(국내 현황)**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성장 미흡

○ 과거 **양(量) 중심의 국가 특허전략**과 **R&D 투자 증가**로 인해 **세계 4위 특허출원 강대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

○ 하지만,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

<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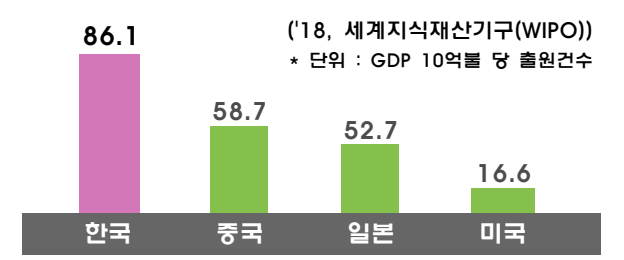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5~'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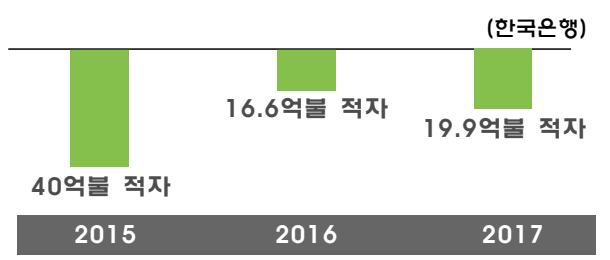

☞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강한 지식재산 확보 필요**

□ **(국내 시장)**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약화

○ 그간 **IP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우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 부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 (한) 6천만원, (미) 65.7억원 → GDP 12배 차이 고려시 1/9

○ **중소기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해도 **사업화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탈취 피해에 취약**하여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 부실**

<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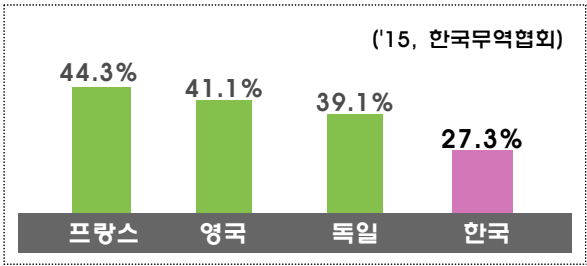

☞ **올해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계기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해외 시장)** 국가 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시장 확대전략 마련 시급

○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 **시장 선점에 필요한 해외출원이 무역규모에 비해 적고,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은 더욱 미비**

* 수출 1억$당 해외출원('17, 건) : (미) 14.2, (일) 28.5, (한) 11.7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17, %) : (미) 74.7, (일) 76.5, (한) 42.3

** 국내출원 대비 PCT 국제출원 비율('17, %) : (대기업) 18.2, (중소기업) 7.8

○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 시장**과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신흥국 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 부재**

선진국 **(미 · 일 · 중 · 유럽 등 IP5)**	◈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제도의 조화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IP5 간 **중복출원 비중은 크지만**(35%), **심사결과 일치율은 낮음**(66%)
신흥국 **(인도 · 브라질 · 아세안 등)**	◈ **우리기업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국과 적극적 심사협력** 필요 * 출원 증가율('10→'15) : 브라질 11.4%, 인도 18.7%, 아세안 26.4%

☞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선진국 · 신흥국에서 선제적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 확산 필요**

정책환경 진단 및 기본방향

□ 정책환경 진단(SWOT 분석)

▪ 특허 빅데이터 4억여건 보유 ▪ 전문 기술분야별 우수 심사 인력 ▪ 특허행정시스템 수출 역량·노하우 ▪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위상	▪ 우수 특허 기반의 혁신적인 창업 저조 ▪ 지식재산 활용 시장 역동성 부족 ▪ 대·중소기업 및 지역간 지식재산 양극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국가 경쟁력 미흡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행정기관의 IP 침해 단속 권한 확대 ▪ IP금융 및 기술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미·중 분쟁 확대로 IP의 중요성 부각 ▪ 신흥국 IP시장 성장	▪ 기술·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지재권 확보 경쟁 심화, 분쟁 확산 ▪ 한류 편승 모방제품 증가 ▪ 기존 제도로 보호되지 않는 신기술 등장

접근방법	정책적 시사점
ST (강점활용 위협극복)	◈ 국가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 심사역량 제고 및 산업계 소통을 강화하여 강한 특허 확보 지원
WO (약점보완 기회활용)	◈ IP 보호 체계 강화를 계기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값받는 기반 조성 ◈ IP금융 활성화로 우수 IP 기반의 창업 활성화 유도
SO (강점활용 기회확보)	◈ IP5의 위상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해외 IP 시장 확대 ◈ 특허행정시스템 수출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국 IP시장 진출 지원
WT (약점보완 위협회피)	◈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으로 차세대 혁신가 육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으로 미래 신기술 보호

□ 정책추진 기본방향

1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창업 · 기업성장 지원

2 IP 보호 강화와 금융 활성화로 IP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시장 조성

3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4 차세대 인재 양성 등 미래의 지식재산 저변 확대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목 표	◇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억불) : ('17) △ 19.9 → ('22) 흑자전환 ◇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IP)금융 규모(억원) : ('18) 4,537 → ('22) 20,000 ◇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확대 * 해외특허 출원(건) : ('17) 67,245 → ('22) 100,000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1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2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3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지원
2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1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2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3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 촉진
3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1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2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 3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지원 확대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1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2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제도 개선 3 국민이 체감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Ⅳ.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 1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현 황

❖ 미국·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등 **新 산업분야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 경쟁력 진단 및 기술·시장 전망**

* USPTO·EPO·WIPO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설치·운영하여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분석

❖ **과도한 1인당 심사·심판처리건수**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17) : (한) 205, (일) 168, (미) 79, (중) 76, (유럽) 57

1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IP-R&D 지원으로 핵심·표준 특허 창출

□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 수립

○ 특허청의 **기술·특허 전문성**과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도출하여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

* 국가 전략산업 분야(혁신성장동력, 신산업 등) 중 주요 정책현안, 산업·시장 동향, 부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대상 선정

<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 추진체계 >

절차	① 산업분석	② 정량진단	③ 심층분석	④ 정책제안
내용	**시장전망, 국가별·기업별 R&D동향조사, 기술 분류**	기술분야별로 **국가별 출원량**을 분석하여 정부지원 **필요 유망기술** 도출	유망기술 세부분류, **세부기술별 특허분석·이슈분석,** 전문가 검토	**R&D 중점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산업별 투자전략** 등 활용방안 제시
예시	디스플레이 산업 (LCD·OLED 등)	LCD·OLED·퀀텀닷·MicroLED 분석	MicroLED 세부기술 (칩제조·전사 등)	광기반 고성능 전사 등 R&D 과제 도출

□ 「특허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 확대

○ 중소기업들의 **공통 애로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특허전략을 제공**하는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신규 추진('19년 25개)

< 산단에 대한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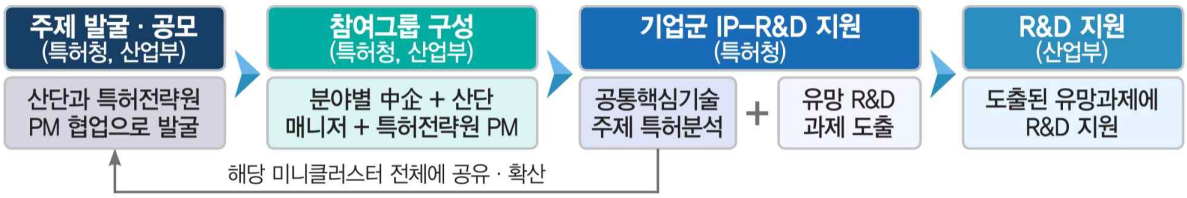

○ **R&D 부처**와 공동으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IP-R&D와 R&D를 함께 지원**하는 **공동사업** 확대('18년 22개 시범 → '19년 80개)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공공연 IP-R&D** 지원을 확대*하고 **실험실 창업 기술에 대한 IP-R&D** 신규 추진

* 기업 수요 기반 IP-R&D 과제 / 전체 과제(개) : ('18년) 8 / 78 → ('19년) 20 / 84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지원」 강화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특허·표준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제공하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 ('18년)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 ('19년)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 R&D 수행 시 '**R&D-특허-표준**' 삼각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성장 동력 분야 표준특허 창출** 지원('18년 27개 → '19년 33개)

□ 「정부 R&D 특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R&D 과제-특허성과 간 연관성*** 검증 및 **부적법한 개인명의 특허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R&D 성과 부정사례** 방지

* R&D 과제계획서·평가보고서 등에 특허분류코드를 부여하여 특허성과와의 연관성 검증

○ **대학·공공연이 보유 중인 특허를 분석**하고 **관리 등급 진단 및 활용 전략을 제시**하여 **전략적 특허관리** 유도('19년 15개 기관)

2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

□ 4차 산업혁명 대응 「심사 인프라 혁신」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최적화된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심사조직을 개편**하여 핵심 기술분야에서 강한 특허 확보 지원

* 융복합 기술분야는 다양한 기술이 관련되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므로 **별도의 심사기준 및 신속심사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설계

○ 초융합, 초연결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술분야 심사관 3인으로 이루어진 **3인 협의심사*** 실시

* 신약 생산에 AI 적용, 교통시스템에 IoT 적용 등 융복합기술은 협업심사 필수적

○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新특허분류체계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동력 기술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심사 정확성 제고 및 R&D 효율화

* ('18년) AI, 빅데이터 등 7개 분야 → ('19년)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등 9개 분야 추가

○ **新특허분류**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확대**하고, **신규·융복합 상품·물품**에 대한 **상표·디자인** 심사체계 정비

○ 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융복합기술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차별화된 DB* 운영 및 품질관리 실시

* IoT 표준문헌 활용률('17년 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 19.4%, (일) 32.5%, (유) 28.4%

** AI 학술논문 활용률('17년 특허심사동향조사사업) : (한) 13.2%, (일) 12.0%, (유) 37.3%

□ 「심사역량 강화」로 심사 효율과 품질 향상

○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적정 심사투입시간** 확보

* 1건당 심사투입시간 목표(시간) : ('19년) 12.9 → ('23년) 20.0

○ **기업체 전문가와 심사관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 확대 및 민간 기술교육기관과 **신기술 교육 협업체계** 구축

○ 외부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품질관리 기능***과 **조사기관간 품질경쟁**을 강화

* (특허) '18년 기시행 / (상표) '19년 준비를 통해 '20년 시행예정

□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비」로 국민 수용도 제고

○ **생활밀착형 제품 관련 출원**에 대한 '**발명의 효과**' 심사 강화

* 심사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출원인의 효과 입증 및 불명확한 효과 삭제 유도

○ 등록지연 및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정비

* '출원인 귀책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산정기준 재검토, 연장대상의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 등

○ 주요 상품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요소*** 기준을 수립하고, 디자인 출원 시 **도면제출 요건** 통합·간소화('19년 下)

* 매출액, 광고 실적, 시장 점유율, 사용기간 등

□ 빠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 제공」

○ 인력증원, 심판절차 효율화, 제도 개선* 등 신속한 **심판처리 기반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추진

* (심판-조정 연계제도) 심판사건을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가능(3개월내 처리)
(적시제출주의) 새로운 증거제출시기 지정, 뒤늦게 제출한 증거 각하 등 심판지연 방지

○ 심리·합의 절차 강화, 심판연구·지원 조직 구축 등 **심판역량확충*** 으로 **심판품질** 제고

* 증거조사절차 강화, 합의체 개편, 연구조직 설립, 지원체계의 안정화·확대 등

○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리절차의 공개 확대** 등 지속적인 **심판혁신 추진**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구술심리 온라인 영상중계, 심판서류 열람서비스 제공 등

3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 지원

◈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으로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및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율 제고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IP전략 지원

○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검증·구체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 지원(IP 디딤돌 사업 지원 930건)

* 지역별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브랜드·디자인 개발, 국제출원 등의 후속지원

○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품질 IP 전략** 제공

* 창업기업에게 IP 나래 사업(453개사) 및 특허바우처(101개사) 지원, 타부처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 연계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기업」 성장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IP 경쟁력 제고** 추진

* 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의 지역 특화분야 지원율(%) : ('16~'18년) 35 → ('21년) 50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창출지원**에서 **IP 보호 및 거래 지원 기능 등으로 확대**하여 **IP 종합지원기관**으로 전환

* 해외 IP-DESK와 연계, 특허거래전문관을 센터 전체로 확대 배치 등

○ 지식재산 서비스·정책에서 **소외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지원**하는 **'IP 바로지원 서비스'** 제공('19년 1,300건)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100여명으로 운영

□ 「IP서비스기업」 육성

○ 모태펀드를 통한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의 우수 IP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IP서비스 시장 확대

*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억원) : ('18년) 70 → ('19년) 125

○ IP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IP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등으로 **IP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IP서비스업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해외 IP서비스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국내·외 지식재산 DB**를 확충(누계 데이터 약 4.4억건)하고, **신규 DB***를 구축·제공하여 IP서비스기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출시** 지원

* 특허피인용 정보, 존속기간 연장등록 정보, 상표의 법적상태 정보 등

○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IP 정보를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 예비·초기(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게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상 제공

□ IP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특허비용부담 완화,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안) >

구 분		현행('18)		개선 추진(안)
창출	특허출원 · 등록비용 세액공제	–	➡	중소기업(25%)
	특허조사 · 분석비용 세액공제	–	➡	중소기업(25%)
활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중소 · 중견(50%)	➡	중소 · 중견(50%),대기업(10%)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중소(25%)	➡	중소 · 중견(25%)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	➡	중소 · 중견 · 대기업(25%)
보호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	➡	중소(10%) · 중견(5%)

○ **직무발명제도 개선**으로 **혁신의욕 고취** 및 **우수특허 확보** 지원

* 비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근거 마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자율성 확대

○ 국가기관 및 지자체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 소유 특허 활용 혁신방안**」 수립('19. 6)

* 특허청 관리위탁 근거규정 마련, 지자체 특허 등의 활용·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특허 사업화 규제 개선, 관련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략 2 지식재산이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현 황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어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혁신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평균 피해액(건, 억원) : ('15) 66/13.7 → ('16) 58/18.9 → ('17) 78/13.1

❖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기초한 금융관행**으로 혁신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시점에 **IP기반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시급

*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5.7%가 부동산 담보·신용 기반('17, 중소기업중앙회)

1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 **지식재산 침해를 강력히 제재하는 제도 및 집행체계를 완성하고, 침해 대응 기반 및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고도화**

□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 현실화**

* 침해자의 이익액 산정 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

○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법 전반으로 확대**

*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 확대(서류→자료),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부과 등

○ **특허·디자인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불이행죄** 도입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며, 충분한 고소기간 확보 및 직권 수사 가능

○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 지식재산「침해 및 허위표시 단속」강화

○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른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 및 검·경 협력으로 **수사전문성 제고**

○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및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위조상품 유통단속 강화

* 위조상품 제조·판매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 **국민 건강·안전 관련 분야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기획조사 분야 : ('18년) 여성용품, 치과 → ('19년) 유아용품, 한의원

□ 국내·외「영업비밀 보호」강화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보호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

*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특허정보원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

○ **영업비밀 보호실태를 심층조사***하여 **산업별 보호전략** 마련**

* OLED 기술 해외유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등

** 조사설계 등 사전 연구용역('19. 4) → '20 예산 반영('19. 4) → 실태조사 실시('20. 1)

○ **국가별 영업비밀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해외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 추진

* ('16년) 미국, 중국, 일본 → ('19년) 베트남(신규), 중국(업데이트) 예정

** IP-DESK와 연계하여 영업비밀 관리 방법, 현지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등 설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고도화로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분쟁중재 제도**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타제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을 조기에 해결**

* 부정경쟁행위 및 경영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

** 부정경쟁행위 조사-조정 및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에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위원풀을 확대**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2 지식재산 금융 · 거래 활성화

◈ 일괄담보제 도입, IP담보대출 회수전문기관 운영, 수요 맞춤형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IP금융·거래 기반 마련

□ 「IP담보대출 활성화」로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 우대상품 출시 지원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 ('18년) 산업·기업·국민 → ('19년) 우리·신한·하나 등 추가

○ 무형자산의 금융활용도를 높이도록 금융위와 협력하여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IP담보·가치평가 인프라 혁신**

* 부동산을 제외하고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 기업자산을 일체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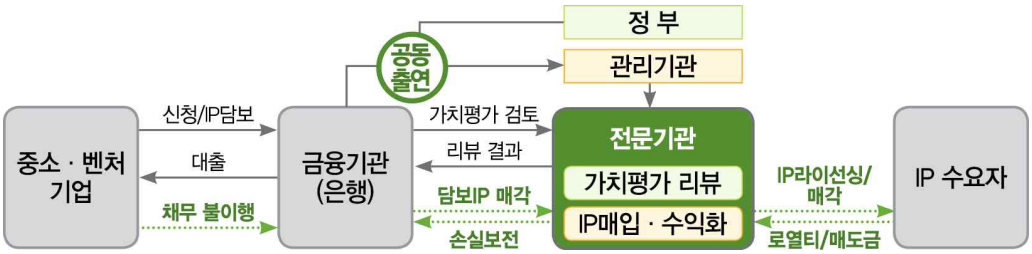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의 **시중은행 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민간 시중은행들의 IP담보대출 참여 유도

* ('18년) IP금융과 기술금융 실적 총계로 평가 → ('19년) IP금융 실적 별도 평가

□ 「IP투자 확대」로 우수 IP 창출·활용 및 부가가치 제고

○ **모태펀드 신규출자** 정부예산의 지속적 확보·출자('19년 100억원) 및 **금융위원회와 공동 IP투자펀드*** 신규 조성

* 모태 · 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출자로 '19년 1,25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IP투자 추진('22년까지 4년간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 **모태조합**을 통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자금의 IP금융 생태계 유입 촉진

* Sales & License Back 투자펀드 조성(200억원) 및 유동화 증권 발행(30억원, '19~'21년)

○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직접소유** 허용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투자**를 개선하여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 수요자 맞춤형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 IP금융 인프라 혁신

○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형 가치평가모델 도입**

○ 경쟁력 있는 **민간금융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 자체의 **IP금융 동력** 확보 및 **품질경쟁체제** 유도

* 가치평가기관(개社): ('18년) 18(공공 11, 민간 7) → ('19년) 20(공공 11, 민간 9)

○ 수출형 기업과 신생 창업기업을 위해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 및 **'해외특허'**까지로 확대

□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거래 활성화」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수요기업 발굴의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허거래전문가**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TLO**와 거래플랫폼 구축

* IP사 등 특허관리전문회사도 거래플랫폼에 참여하여 해외특허 발굴·이전

○ 특허 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수요·공급자 네트워크 (IP-PLUG)*** 활성화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IP-Market) DB 확충****

* 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심으로 구축(10개 신기술분야)

** 산업부 등 국가기관 특허(3,200여건), 지자체 소유 특허(4,200여건) 등을 추가 탑재

3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 촉진

◈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업화 관련 규제혁신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TLO 혁신」 지원

○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을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전환하여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재원** 확충

* (정부) 초기자금 지원, (대학·공공연)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상용화 검증)하여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자

** 특허 포트폴리오 과제 수(개) : ('18년) 35 → ('19년) 18(일반형), 6개 기관(갭 펀드형)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을 **다년도(5년)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 종료 후 **대학·공공연 자체운영** 유도

* 사업종료 후에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부담(현금)을 매년 상향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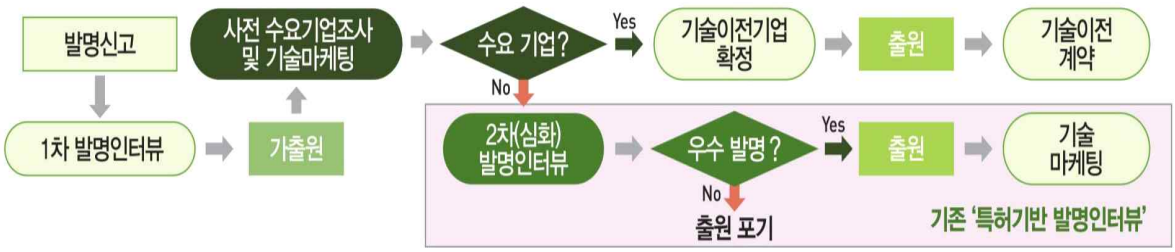

○ **민간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 파견**하여 우수발명을 선별하고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량을 강화

* 전문가 파견기간(3년) 중 특허전담인력 및 특허관리시스템이 파견기관에 내재화되도록 기관 자체 채용 및 규정 정비 유도

< 특허경영전문가 연차별 추진내용 >

□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관행 개선」

○ 부실한 특허명세서 작성의 원인인 **낮은 대리인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을 보급

* 국가기관 대상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마련·보급('18. 12월), 대학·공공연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 유도('19년~)

○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충분한 특허비용 확보 지원**

* (현행) 기술료의 5%를 분배 → (개선) 지식재산권 비용 실사용액을 선공제

○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한 후 우수한 연구 성과만 **고품질 특허**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활성화

* 빠른 출원일 확보를 위해 발명의 내용만으로 출원하고 청구범위는 추후 제출

□ 기술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 **통상실시원칙 완화, 중소·중견기업 우선원칙 완화** 등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관련 규정***에 대한 **범부처 기술이전 실무가이드** 마련

* 공동관리규정(과기정통부), 기술이전촉진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산업부) 등

< 기술이전 실무가이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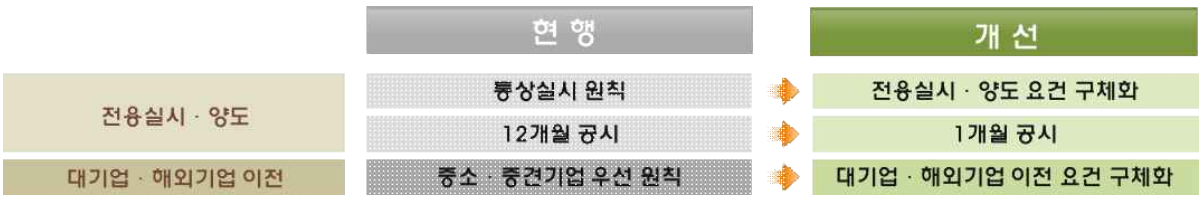

○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망특허 사장 방지

* (발명진흥법 개정안)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특허 포기 시 종업원에 대한 통지·양도 절차 규정, 비용 분담 협의 근거 마련 등

○ 경상기술료 방식을 확대·유도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구비한 **표준 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성실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을 우대****

* 최소기술료, 회계사 실사 협조의무, 판매단위당 경상기술료, 자동계약해지 등

**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사업 선정 시 우대

전략 3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현 황

❖ **신흥국**(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의 **우리기업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국의 **심사지연**으로 **신속한 권리확보** 곤란

* 신흥국 심사착수기간('17년 WIPO 통계): 브라질 7.4년, 인도 4.3년, 베트남 3.5년

❖ **한류 확산에 편승**한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우리기업 제품의 **모방품 유통 및 부당경쟁행위 지속**

* 중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건) : ('16년) 406 → ('17년) 588 → ('18년) 1,142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별 특성과 기업진출 수요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 중심의 통상전략' 수립 · 추진**

1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주도하고, 신흥국·개도국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권리 확보 지원**

□ **(선진국) 특허심사 협력 및 글로벌 현안에 선제적 대응**

○ '19년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 주도

* 우리나라 주도과제인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등과 신규협력·제도조화 논의 주도

○ **주요국**들과 선행기술정보 및 1차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국가간 특허심사기준 조화** 추진

* (현재) 한·미 → (확대) 중국('19. 1월), 영국('20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신흥 · 개도국) 기업의 원활한 지재권 확보를 위해 협력지역 확대**

○ (新남방)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에 연계하여 ASPEC[4]과 **심사협력**을 추진하고, 국가별로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 지원

* 아세안 국가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및 교육 사업 제공

4) 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ASPEC):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이 회원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사하는 협력체('09년 결성)

○ **(인도·브라질)** 우리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대응하여 **맞춤형 심사 협력 프로그램 시행*** 추진

* 심사처리기간 단축 가능성이 있는 인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특허공동심사 병행 추진, 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는 브라질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추진

○ **(사우디·UAE)**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IP행정 수출 확대

* (사우디) 'IP 행정시스템 수출 및 컨설팅' 계약 체결('19.2월) 및 특허청 인력파견 추진
(UAE) 지식재산 행정체계 자립을 위한 교육, 제도 컨설팅 추진('19년)

○ **(이란)** 지식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설계·실시 등(KSP[5] 사업)

○ **(이집트)** **KOICA와 공동**으로 전자출원·전자화·검색서비스 등 **특허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 교육** 지원

○ **(파라과이)**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개발 지원

□ **(저개발국)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제도 도입 유도**

○ **개도국** 대상으로 **'심사 ODA'**와 **무상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IP제도 도입 및 유상 사업 연계** 유도

*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 심사 ODA(무상 선행기술조사) 및 컨설팅 지원

○ **KIPO-WIPO 적정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세안 지역 국가 대상** 적정기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지식재산-ODA** 추진

□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지식재산권 분야 기본합의서(안)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고위급 의제화** 추진

○ 정책연구와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남북 상호 이익균형**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인프라** 강화

---

5) 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해외개발 원조사업

2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

◈ 시장 규모가 큰 주요국가에서 해외특허 확보에 주력하여 기업 등 혁신주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해외특허 확보」 지원

○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창출·보호**에 투자

* IP출원지원 펀드(억원) : ('18년) 20 → ('19년) 40 이상

** ('19년) 500억원 조성. 투자금의 일부를 투자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활용

○ **특허공제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 및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IP 확보 지원**

* 가입기업 수 목표(개): ('19년) 1,040 → ('25년) 26,000

○ 우수 해외특허 확보·활용을 촉진하는 **해외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 펀드** 조성 확대('18년 50억원 → '19년 80억원)

○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관리회사-해외지식재산센터 협업으로 **우수특허 선별·해외출원 지원체계** 구축

* 특허바우처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과 연계

□ 유망 「중소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개社) : ('18년) 510 → ('19년) 570
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19년 1천여건), 전략분석, 개발 등 종합 지원

○ 제품 중심의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R&D**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19년 43개)

○ **IP가치평가 지원대상**을 **국내특허에서 해외특허로 확대**하여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IP투·융자 지원** 강화

3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 · 지원 확대

◈ **해외 K-브랜드 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

□ 해외에서 「K-브랜드 보호」 강화

○ **전세계 한류편승 외국기업의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매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대응 확대**

* (베트남, 태국, UAE 등) 단속 후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

○ **해외 상표선점 피해에** 우리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 등 주요사업간 연계** 지원

* 중국(매월) 및 베트남(반기별)에 대해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실시

○ **중국 및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적시 대응

* (중국) 알리바바·징동, (아세안) LAZADA(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 위조상품 유통 거점인 **홍콩에 IP-DESK를 신설**하고, **한류확산 속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 확대**

○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 분쟁 컨설팅**을 신설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규 컨설팅 제공

* 유전자원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해 채택된 국제규범

○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기술분야***를 **산업분야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 지원

* 디지털 영상분야(H.265 Codec 관련), 음향기술분야(Dolby 관련) 등

전략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현 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발명·지식재산 **교육 여건은 미비**하고 **중소기업 전문인력도 부족**

* 지식재산 교육 비율('17) : 초·중·고 8.3%, 대학 4.0%, 중소기업 31.6%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보유 비율('17) : 22.7%

❖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도로는 보호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AI에 의해 창출된 성과물(발명·디자인 등),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1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발명교육 기반 확충 등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미래의 발명인재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창의·융합형 「초·중·고」 발명교육 기반 확충**

○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확대*하여 **해당 권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 허브**로 육성

* 사업추진 협약 체결('19. 1) → 설치추진단 구성·운영('19. 2~) → 운영규정 제정('19. 상)

○ **교육청 장학관 협의체** 운영, **교원연수** 확대,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채택** 확대 등 **발명교육의 체계적 확산** 지원

○ **발명·SW 교육을 융합**한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실습 위주의 발명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발명교육 캠프를 운영**하여 **사회적 격차** 해소

* 장애인(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IP교육 및 특수발명교육,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찾아가는 'The 함께하는 발명교실' 및 KAIST 교육기부센터 모델학교 대상 '학생발명 교육기부' 확대

□ 「대학(원)」의 지식재산 교육 강화

○ 지식재산 기반 **창업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과 연계된 **IP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선도대학 교육** 내실화

* 특허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 브랜드·디자인 개발,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등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관부처 창업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 발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강화

* 대학창의발명대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등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특화**된 지식재산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개편*

* 특화 분야(AI, 제약, 바이오) 강좌 신설, 중소기업·TLO 인력 단기과정 신설 등

□ 「취업연계」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의 **기업 및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대학·전문계고** 등에 **지식재산 교육과 취업** 지원

* 채용연계형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지원(명) : ('18년) 580 → ('19년) 665

○ **대학생** 대상 **산업별 특허정보검색·분석** 과정 및 **은퇴 과학자** 대상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정** 등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설

□ 「변리사 제도 및 교육」 개선으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 변리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회 자율·책임** 강화 및 **실무수습 효율화 방안** 마련

* 특허청·변리사회 공동으로 제도연구회를 구성,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 도출

○ **민간 중심의 변리사제도 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자문기구로 신설, 회의자료·회의록 등 운영전반을 공개

○ **수습교육** 시 **출원·심판·소송** 관련 **실무역량** 배양, 특허정보분석·가치평가 등 **IP사업화 실습**으로 **IP경영컨설팅 역량** 강화

2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제도 개선

◈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선점·보호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운영**

□ **「특허 보호체계」를 정비하여 미래 신기술 보호**

○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 간접침해 인정범위를 3D 파일 등 전자적 수단 배포 행위 등으로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및 AI 진단기술의 **특허 대상 인정*** 등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대상을 확대**하여 **신산업을 보호**

*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신설 추진도 병행

○ AI 발명, 블록체인 등 **SW 신기술**의 **특허등록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결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주요국의 심사 동향을 고려하여 세부 기술분야별 다양한 심사 사례 제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이모티콘·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하고 **온라인상 상표의 사용***도 **사용의 한 유형**으로 추가

* 디지털 상품의 경우 '전송' 등을 통해 권리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 **공유 상표권 갱신** 시 **공유자 중 1인의 신청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법적보호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디자인 등록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지재위·문체부 등과 **범정부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3 국민이 체감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특허행정 효율화와 대민 서비스 품질 제고

□ 「스마트 특허넷」 구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

○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는 특허정보시스템 5개년('19년~'23년) 개발 착수

* 기술성숙도가 높고 국내·외 추진사례가 있는 AI 기반 기계번역, 상표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기능을 특허행정에 우선 적용

○ 특허정보시스템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표준화·개방화**하고, **사무처리 기능을 자동화**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기반** 마련

□ 특허고객 「서비스 편의」 제고

○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재구축

○ **모바일 기반**의 연차등록료 납부 안내 및 자동 납부 등 **등록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개선

○ 특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특허 제품에도 표시**할 수 있는 **QR코드 및 DOI주소**[6] **서비스 범위 확대***

* (현행) 등록증, 특허청 간행물, KIPRIS 특허·실용신안 → (확대) 공보, KIPRIS 상표·디자인

□ 「수수료 체계」 개편안 마련 및 수수료 납부 절차 개선

○ 권리 주체별 특허권 존속 현황, 사업화 주기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안 마련**

○ **과오납 수수료 반환절차** 개선 및 **반환청구기간**(3년→5년) 연장

6)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웹상 콘텐츠의 URL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불변 주소체계

Ⅴ. 분기별 추진계획

1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1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특허 기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 기업群 공통핵심기술 IP-R&D 추진				
■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 특허성과 연관성 검증, 개인명의 근절 종합방안 마련				
■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 및 활용전략 제시				

2 고품질 심사 · 심판 서비스 제공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산업계와 소통·협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심사 확대				
■ 출원·심사 동향 제공, 산업계 소통·협력 강화				
■ 등록제 전환에 따른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 출원인 지연기간 및 연장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				
■ 상품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인정기준 마련				
■ 국선대리인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및 하위 규정 정비				

3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 성장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디딤돌, 나래, 특허바우처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방안 수립				
■ 지식재산 데이터 입수·구축 및 품질 관리				
■ 지역 특화산업 IP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지식재산 세제개선				
■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2 IP가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1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선진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도입(특허, 상표, 디자인, 부경법)				
■ 특허·디자인 침해죄의 반의사불벌죄 전환				
■ 아이디어 탈취 행위 시정명령 및 불이행죄 도입				
■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도입				
■ 특별사법경찰 출범 및 집무규정 마련				
■ 온라인 사업자 간접침해 책임 상표법 개정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				
■ 지식재산 중재 제도 도입 추진				

2 지식재산 금융 · 거래 활성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 회수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예산확보 등				
■ 기술금융에 IP금융 실적을 독립지표로 반영				
■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자펀드 조성(유동화 증권펀드 등)				
■ 가치평가모델 개선				
■ 민간 중심 가치평가기관 확대 지정				
■ 민관협력 거래플랫폼 구축				

3 대학 · 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 촉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갭 펀드형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도입				
■ 발명인터뷰 다년도 지원방식 도입				
■ 국가·지자체 소유 특허 활용 혁신방안 마련				

3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1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5 청·차장 회의 개최 및 심사·정보화 협력 확대		■	■	■
■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 개최 및 UAE·사우디 컨설팅	■	■	■	■
■ 심사·정보화 협력 확대(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	■
■ 파라과이 특허청 특허시스템 개발 추진		■	■	■
■ 이집트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
■ 심사 ODA 시행	■	■		
■ 남북 산업재산권 분야 기본합의서(안) 및 협상 전략 마련	■	■		

2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경쟁력 확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모태펀드 특허계정의 자펀드 조성		■	■	■
■ 특허공제사업 추진	■	■	■	■
■ 대학·공공연 특허비용 확보를 위한 펀드 조성 및 규정 개정	■	■	■	■
■ 글로벌 IP 스타기업 해외 권리화 지원 제도 개선	■			
■ 글로벌 기술혁신 IP-R&D 지원	■	■	■	■

3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 · 지원 확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한류편승 외국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추진		■	■	
■ 아세안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 강화	■	■	■	■
■ IP-DESK 신규 개소(홍콩) 및 확대 추진	■	■	■	■
■ 권리통합형 분쟁 컨설팅 신설 추진		■	■	■
■ 유전자원 관련 신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	■	■	■
■ 산업분야 협회·단체와 협력 공동대응 필요 분야 발굴·지원	■	■	■	■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1 창의 · 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발명체험교육관 신규 설치 지원				
■ 산학협력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				
■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개편				
■ 대학, 전문계고 등 지식재산 교육과 취업 지원				
■ 변리사 제도 개선				
■ 실무·실습 중심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운영				

2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제도 개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체계 개선안 마련				
■ 바이오헬스 및 SW 분야 심사기준 개정				
■ AI·블록체인 등 사례연구 및 심사기준 개정				
■ 상표·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법령상 제한규정 등의 경우 판단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AI 권리별 쟁점 파악				
■ 관련부처·민관 협의 및 법률안 등 권고				

3 국민이 체감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스마트 특허넷 구축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0년 "정보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자 선정				
■ 웹 기반 전자출원 등 시스템 개발				
■ 수수료 체계 연구 및 개선 추진				
■ 수수료 감면·반환 시 직권제 확대				
■ 과오납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연장				